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정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749

발의연월일: 2020. 8. 6.

발 의 자:박 정·정성호·유동수

박성준 • 정춘숙 • 서삼석

김원이 · 이성만 · 이병훈

김경만 · 송옥주 · 윤후덕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중소기업시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조사, 연구 및 평가를 수행하는 전문연구평가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이에 따라 전문연구평가기관으로 지정된 중소기업연구원은 중소기업의 경영전략과 정책개발을 연구하는 중소기업 전문 종합연구기관으로서 중소기업의 성장, 발전을 위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동법 시행령에서 매 3년마다 재지정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국책연구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.

이에 중소기업연구원의 법적 기능 강화를 위해 법률에서 설립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25조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중소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5조의2(중소기업연구원의 설립) ① 정부는 중소기업 관련 시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조사, 연구, 교육 및 평가를 추진하기 위하여 중 소기업연구원(이하 "연구원"이라 한다)을 설립한다.

- ② 연구원은 법인으로 한다.
- ③ 연구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직원을 둔다.
- ④ 정부는 연구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.
- ⑤ 연구원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- 1.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육성·발전을 위한 조사, 연구 및 정책제 언
- 2.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분석, 평가 및 교육
- 3. 국내외 연구기관, 국제기구, 민간단체와의 교류 및 연구협력사업
- 4. 정부·국내외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연구용역의 수탁
- 5.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관련 정책정보 및 통계의 생산·분석

- 6. 조사·연구결과의 출판 및 홍보
- 7.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영 등에 관한 상담, 자문 및 정보 제공
- 8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따른 부대사업 및 연구원 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
- ⑥ 연구원에 대하여 이 법과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「민법」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- ⑦ 이 법에 따른 연구원이 아닌 자는 중소기업연구원 또는 이와 유 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중소기업연구원에 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「민법」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중소기업연구원은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연구원으로 본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제25조의2(중소기업연구원의 설
	립) ① 정부는 중소기업 관련
	시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조사,
	연구, 교육 및 평가를 추진하기
	위하여 중소기업연구원(이하
	"연구원"이라 한다)을 설립한
	<u>다.</u>
	② 연구원은 법인으로 한다.
	③ 연구원은 정관으로 정하는
	바에 따라 임원과 직원을 둔다.
	④ 정부는 연구원의 운영 등에
	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
	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.
	⑤ 연구원은 설립목적을 달성
	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
	업을 수행한다.
	1.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육
	성·발전을 위한 조사, 연구
	및 정책제언
	2.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
	정책의 분석, 평가 및 교육
	3. 국내외 연구기관, 국제기구,
	민간단체와의 교류 및 연구협

력사업

- 4. 정부·국내외 공공기관 등으 로부터 연구용역의 수탁
- 5.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관련 정책정보 및 통계의 생산·분 석
- 6. 조사·연구결과의 출판 및 홍 보
- 7.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영등에 관한 상담, 자문 및 정보 제공
- 8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 지의 사업에 따른 부대사업 및 연구원의 설립목적을 달성 하는 데 필요한 사업
- ⑥ 연구원에 대하여 이 법과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률」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「민법」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- ⑦ 이 법에 따른 연구원이 아난 자는 중소기업연구원 또는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못한다.